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3
----------	----

제안년월일 : 2007년 2월 22일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여비기준 중 일비를 조정하고
- 일부 용어를 달리하거나 중복 또는 불합리한 내용을 정정·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일비조정

-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일비를 1일당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조정함.(안 별표1)

나. 용어정정 및 삭제

-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용어를 통일함.(안 제6조)
- 별표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 중 “의원”란 해당부분 전체와 “구분”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
- 별표1과 별표2의 비교 중 1을 각각 삭제(안 별표1, 별표2)
- 별표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 중 “철도운임”란 해당부분 전체와 “선박운임”란 해당부분 전체를 삭제(안 별표2)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5. 관계법령발췌 : 별첨

- 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별표 7)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1항 중 “현지교통비”를 “일비”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 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 비고 : 1.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 등급에 해당하는 철도 운임을 지급한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 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미불화)

급 준 구 분	지 기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장· 부의장	1등 정액	40	가등급	205	가등급	133	150	180	210
			나등급	149	나등급	99			
			다등급	118	다등급	72			
			라등급	100	라등급	61			
의원	1등 정액	35	가등급	166	가등급	107	140	170	195
			나등급	120	나등급	78			
			다등급	92	다등급	58			
			라등급	79	라등급	49			

- 비고 : 1.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 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 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2. 국가 및 시도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4”에 의거 지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여비 지급) ①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의원의 출장여비는 <u>현지교통비</u>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 (생략)</p> <p>[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일비 (1일당)</th> <th>숙박비 (1야당)</th> <th>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의장 부위원장</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생략)</td> <td>10,000</td> <td>(생략)</td> <td>(생략)</td> </tr> <tr> <td>의원</td> <td>1등급</td> <td>2등 정액</td> <td>정액</td> <td>정액</td> <td>10,000</td> <td>46,000</td> <td>25,000</td> </tr> </tbody> </table> <p>비고 : 1. <u>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u> 2. (생략)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위원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0,000	(생략)	(생략)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p>제6조(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여비 지급) ①..... <u>일비</u>..... ② (현행과 같음)</p> <p>[별표1] 국내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u>(삭제)</u></th> <th>철도 운임</th> <th>선박 운임</th> <th>항공 운임</th> <th>자동차 운임</th> <th>일비 (1일당)</th> <th>숙박비 (1야당)</th> <th>식비 (1일당)</th> </tr> </thead> <tbody> <tr> <td><u>(삭제)</u></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d>20,000</td> <td>(현행과 같음)</td> <td>(현행과 같음)</td> </tr> <tr> <td><u>(삭제)</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d><u>(삭제)</u></td> </tr> </tbody> </table> <p>비고 : 1. <u>(삭제)</u> 1. (현행과 같음) 2. 「지방자치법 시행령」... 「공무원여비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 </p>	<u>(삭제)</u>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u>(삭제)</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의장 부위원장	(생략)	(생략)	(생략)	(생략)	10,000	(생략)	(생략)																																										
의원	1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10,000	46,000	25,000																																										
<u>(삭제)</u>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u>(삭제)</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0,000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u>(삭제)</u>																																										

관계법령발취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1. 의정활동비 : 별표 5에 의한 금액
2. 여비 : 별표 7 및 별표 8에 의한 금액
3. 월정수당 :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별표 7] <개정 2006.2.8, 2006.10.1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원)

구 분	지급 기준액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자동차 운임	현지 교통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시·도의회 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시·군·자치구의회의원	1등급	2등정액	정액	정액	정액	2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 (동일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을 말한다)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 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 철도운임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8] <개정 2005.4.27>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지급범위(제15조관련)

(단위 : 미불화)

지 급 기준액 구 분		항공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준 비 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시·도	의 장 · 부의장	1등정액	40	205	133	150	180	210
	의 원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시·군· 자치구	의 장 · 부의장	1등정액	35	166	107	140	170	195
	의 원	2등정액	30	145	81	130	155	180

비 고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3. 「공무원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 <개정 2005.1.7>

국외여비정액표(제16조제1항관련)

(단위 : 미불화)

구 분	등 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에 의한 특호의 기목 해당자	가	80	1,828	214
	나	80	1,066	156
	다	80	926	117
	라	80	637	98
동표 특호의 나목 해당자	가	70	1,032	201
	나	70	460	146
	다	70	370	110
	라	70	307	91
동표 특호의 다목 해당자	가	60	387	186
	나	60	307	136
	다	60	233	102
	라	60	164	85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 본부장 및 차관	가	50	290	160
	나	50	220	117
	다	50	176	87
	라	50	145	73
동표 특호의 라목 해당자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 부장 및 차관 제외)와 동표 제1호 해당자	가	40	205	133
	나	40	149	99
	다	40	118	72
	라	40	100	61
동표 제2호 해당자	가	35	166	107
	나	35	120	78
	다	35	92	58
	라	35	79	49
동표 제3호 해당자와 준위인 군인	가	30	145	81
	나	30	95	59
	다	30	70	44
	라	30	62	37
동표 제4호(준위 제외) 해당자	가	26	129	67
	나	26	87	49
	다	26	64	37
	라	26	56	30

비 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마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04-11-12 조례 제 02829호

(일부개정) 2005-09-30 조례 제 2878호

(일부개정) 2006-05-12 조례 제 292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2. 13, 2005. 9. 30, 2006. 5. 12)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는 월 1,200,000원으로 하고 그 보조활동비는 월 300,000원으로 하며, 매월 충청북도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4. 2. 13)

제3조(월정수당) ①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월 1,830,000원으로 한다. 단, 1월 미만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2005. 9. 30, 2006. 5. 12)

②제1항의 월정수당은 충청북도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 5. 12)

제5조(여비지급기준) ①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의원의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고, 국외여비는 별표 2의 국외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의회사무실소재지내에서의 출장여비지급) ①의회사무실 소재지내에서의 의원의 출장여비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한다.

②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이라 함은 충청북도의의회사무실이 있는 청주시내에서의 출장과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충청북도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4. 11. 12)

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3. 5. 9 조례 제2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국내여비지급에 관하여는 2002년 1월 4일부터, 국외여비지급에 관하여는 2003년 1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2. 13 조례 제2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04. 11. 12 조례 제2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9. 30 조례 제2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5. 12 조례 제2929호)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

[별표 1] (개정 2003. 5. 9)

국 내 여 비 지 급 기 준 표

(단위 : 원)

구 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 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 비 (1일당)
의 장 부 의 장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의 원	1등급	2등정액	정 액	정 액	10,000	46,000	25,000

비고

1. 의회 소재지내에서의 여행(동일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내에서의 여행을 말한다)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철도운임구분표중 1등급은 새마을호 특실을 가리키며, 당해철도운임 구분표를 적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노선의 열차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철도운임을 지급한다.
3.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내여비지급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03. 5. 9)

국외여비지급기준표

(단위 : 미불화)

지급 기준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야당)	식비 (1일당)	준비금		
							15일 미만	15일 이상 30일 미만	30일 이상
의 장 · 부의 장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철도임	· 2등급 이상의 등급구별이 있는 경우에는 최상등급의 선임	1등 정액	40	가등급 205 나등급 149 다등급 118 라등급 100	가등급 133 나등급 99 다등급 72 라등급 61	150	180	210
의 원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차에 요하는 실비액	· 등급구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승선에 요하는 실비액	1등 정액	35	가등급 166 나등급 120 다등급 92 라등급 79	가등급 107 나등급 78 다등급 58 라등급 49	140	170	195

- 비 고 : 1. 여행지역의 거리 및 현지물가 등을 감안하여 여비지급 범위안에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으로 국외여비지급 기준이 조정된
때에는 이 표를 개정하기 전이라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또는 공무원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국가 및 시도별 등급구분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4”에 의거 지급한다.